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분류 체계에 대한 시론

오영찬(吳永贊)

I. 머리말

II. 기존의 분류 체계

III. 문서 분류와 기능적 출처

IV. 박물관의 조직 및 기능 분석

V. 분류 체계와 분류 기호

1. 분류 체계
2. 분류 기호

VI. 맺음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주요 논저:

『기원전 2세기대 서북한 고고자료와 위만조선』, 『한국고대사연구』76(2014);
『낙랑군 출토 봉니의 진위에 대한 기초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88(2015);
“Legacies of Japanese Colonialist Historiography and Scholarly Views on Wiman Joseon,” *Korea Journal*, vol.56, no.1(2016); 『낙랑토성 출토 봉니의
연대와 성격』, 『동국사학』63(2017); 『식민지 박물관의 역사 만들기—조선총독부박
물관 상설전시의 변천』, 『역사와 현실』110(2018); 『민족의 기원을 찾아서—한국 상
고 민족 담론의 창안』, 『한국 근현대 학문의 성립과 ‘통설’의 탄생』(2019) 등

본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 대해 ‘기능적 출처’의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분류 체계와 분류 기호를 제시하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조선총독부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조선총독부 공문서 체계에 부합되고 편입이 가능하도록 문서 분류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 기능적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총독부박물관의 조직과 기능에 부합하는 분류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 그러한 분류 체계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간명한 분류 기호가 부여됨으로써 문서의 검색과 활용에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 체계에 맞춰 총독부박물관의 대기능은 학무국으로, 중기능은 학무국 산하의 과 단위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기능별 출처’ 개념에 입각하여 총독부박물관의 업무 기능은 서무, 고사사, 명승천연기념물, 고적, 박물관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계별 문서는 업무 내용에 따라 다시 2차 분류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세부기능의 순으로 분류 기호를 설정하였다. 총독부박물관 문서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 체계에서 ‘A 학무’에 해당된다. 중기능 분류 기호는 학무국 내 과별 조직의 변천과 기능을 고려하여 학무(01), 편찬(02), 종교(03), 사회교육(04), 박물관(05), 기타(06) 등으로 설정하였다. 소기능은 총독부박물관의 기능을 분석하여 추출하였으며, 2자리 숫자를 부여하였다. 서무(01), 고사사(02), 명승천연기념물(03), 고적(04), 박물관(05)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계별 업무에 해당된다. 세부 기능과 그 아래 하위 기능은 계 내에서 업무 분장과 연결하여 다시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분류 체계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국립중앙박물관, 기능적 출처, 분류 체계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분류 체계에 대한 시론

오영찬(吳永贊)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I. 머리말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 과정에서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물로, 현재 국가기록원에 95% 가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다.¹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이하 ‘총독부박물관’이라 칭함)이 생산한 기록물이 다량으로 남아 있는데,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작성한 공문서와 함께 조사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박물관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총독부박물관의 소장품과 건물,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설립되면서 이를 소장하게 되었다.

총독부박물관은 식민주의 역사관의 정립과 유포를 위한 박물관 기능과 함께, 식민지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였다. 총독부박물관은 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유적에 대한 고고학 발굴 조사와 역사 유적의 보존 및 관리, 그리고 고건축물의 수리와 보존, 희귀 동식물과 광물의 보호까지 담당하였다. 총독부박물관은 소장품 관리와 전시를 수행한 박물관의 기능뿐 아니라 식민지 문화재 정책 및 행정을 총괄한 유일한 기관이었으며, 총독부박물관 문서는 박물관 운영과 문화재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생산된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는 일제 식민 통치기 박물관 운영, 문화재 관리 및 정책에 대한 공식 자료이자 일차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총독부박물관 문서를 정리하여 1996년과 1997년 두 권의 목록집을 출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28705).

1 국가기록원에는 조선총독부 문서고에서 이관한 공문서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이관한 공문서,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조선사편수회 및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관련 공문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관련 공문서가 각각 소장되어 있다. 지수걸 외,『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방법론』(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p.7.

한 바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화된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공개에 힘입어 최근 총독부박물관 문서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발전,² 발굴,³ 지방고적보존회,⁴ 지정,⁵ 수리공사⁶ 등 관련 문서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문서 뿐 아니라 유리원판사진과 유물까지 활용하여 일제 강점기 조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⁷

이러한 자료 공개와 조사 연구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박물관 문서에 대한 분류 체계와 분류 기호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문서의 활용 과정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체계화된 분류 기호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무엇보다 선행 연구에서 전거로 제시된 문서를 실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총독부박물관 문서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새로운 분류 체계와 분류 기호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 정리 및 목록 작업에서 이루어진 분류 체계를 검토한 후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능적 출처’의 개념에서 문서 분류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총독부박물관의 조직과 업무를 통해 체계적인 기능 분류를 시도한 후, 이를 세부 기능으로 설정하고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분류에 적용시켜 보았다. 마지막으로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분류 기호를 제시하여 향후 정리 및 공개 작업의 시안으로 제시하였다.

Ⅱ. 기존의 분류 체계

국립중앙박물관은 2000년대 이전까지 유물 관리를 위한 업무 자료 또는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로 총독부박물관 문서를 자체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었지만,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문서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대외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73년 황수영의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

2 김도형, 「일제하 총독부박물관 문서와 관리 체계」, 『기록학연구』3(2001).

3 심재연, 「조선총독부 문서에서 보이는 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발굴 조사와 문서행정」, 『인문과학연구』45(2015); 조은정, 「일제강점기 요지조사와 고려청자 연구의 의미」, 『미술사학』33(2017).

4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9).

5 이현일·이명희,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과 지정」, 『미술자료』85(2014).

6 서효원·전봉희,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개심사 대웅전 수리공사의 체계와 경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33-7(2017); 서동천, 「일제강점기 초기 역사적 건조물 보존수리의 특징에 관한 연구: 고적보존회 활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34-1(2018); 서효원, 「화엄사 각황전 수리공사를 통해 본 ‘보존령’ 제정 이후 일제강점기 보물 건조물 수리공사의 현장운영과 수리방침」,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34-1(2018).

7 2019년 6월 기준으로 제31집이 발간되었으며, 유리건판자료집도 제10집까지 나왔다(http://www.museum.go.kr/site/main/archive/report/category/category_124).

를 통해서이다.⁸ 이 책은 일제에 의한 문화재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초록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인용된 다수의 자료는 당시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총독부박물관 문서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저자는 총독부박물관 문서를 훑으면서 일제 강점기 이루어진 문화재 도굴이나 약탈과 관련된 사료를 선별하고 이를 자료집의 형태로 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총독부박물관 문서 자체나 그 내용에 대한 연구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작업은 아니었고, 다만 문서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일어난 문화재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후 총독부박물관 문서는 전면적인 公刊의 형식으로 활용된 적은 거의 없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 자료로 간간이 이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정리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크게 목록화와 전산화 작업으로 나누어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96년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목록』(이하 「1996년 목록」이라 칭함)과 1997년 『광복 이전 박물관 자료 목록집』(이하 「1997년 목록」이라 칭함)을 간행하였다.⁹

먼저 「1996년 목록」은 001번부터 457번까지 문서에 일련번호를 붙인 후, 각 번호 별로 ①제목 ②작성연도 ③작성자 ④중요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총독부박물관 문서에 대한 첫 번째 정리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일정한 분류기준이 없이 일련번호별로 문서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 방식을 이후 전체 문서의 정리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동 목록집의 「일러두기」에서는 문서에 기록된 일련번호를 이용하였다고 하였으나, 문서에 기록된 일련번호가 총독부박물관에서 부여한 번호인지, 후일 국립중앙박물관의 정리과정에서 생성된 번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련번호를 부여한 기준이 시기별 또는 지역별, 주제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아울러 목록집의 제목이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목록'으로 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대상 자료를 '고문서'라고 지칭하고 있다. '고문서'라는 개념과 범주가 모호한데, 이러한 점 때문에 다수가 총독부박물관의 공식 문서라는 점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으며, 목록집의 말미에는 「450 송국리 발굴 일지」처럼 1950~70년대 생산된 자료들도 수록되어 있다.

「1997년 목록」에서는 보존, 발견, 구입, 진열, 기부, 고적조사, 국유림, 지정, 도면, 지도, 신문보도, 기타 등으로 1차 분류를 한 후, 각 주제 내에서는 시기별로 일련별 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목록집에서 1차 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주제는 총독부박물관 문서에 대한 정리 및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에 의해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서철의 제목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의 업무 성격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차 분류 기준이 총독부박물관의 기능과 자료의 종류가 혼재되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난점이 있으며, 제시된 주제로 포괄되지 않는 문서도

-
- 8 황수영 편,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고고미술자료 제22집』(서울: 고고미술동인회, 1973). 이 책의 증보·해제판이 2014년 출간되었다. 황수영 편, 이양수·이소령 증보, 강희정·이기성 해제,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서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 9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목록』(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6); 국립중앙박물관, 『광복 이전 박물관 자료 목록집』(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7).

일부 존재한다는 점에서 분류 기준으로서의 한계가 보인다. 아울러 정리 대상 문서의 범주가 당초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이왕가미술관처럼 후일 국립박물관에 통합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별개 기관이었던 박물관의 기록물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1996년 목록』과 마찬가지로 1945년 이후 기록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두 목록집에 실린 총독부박물관 문서가 원래 별도로 관리되던 별개의 기록물이 아니라, 당초 동일한 체계 속에 보관되어 오다가 어느 시기에 임의로 분리된 기록물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두 목록집의 정리 방식도 서로 다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보관 경위에 대해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11년 7월 「朝鮮總督府處務規程」 ‘제5장 문서의 보존 및 편찬’에 의하면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는 문서과장이 정한 구분에 따라 완결일자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것을類別로 편철하되, 단 회계에 관한 문서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1년 단위로 구분하기 어려운 문서는 예외로 했다. 그리고 편철할 때의 두께는 2寸 정도로 하고, 도표 등을 별책으로 만들 경우에는 본책 및 별책의 목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했다.¹⁰ 완결된 문서는 주무과에서 문서과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33년 단계에는 10일 이상 주무과에서 완결문서를 보관할 수 없었고, 1940년 단계에는 주무과에서 상당 기간 동안 완결문서를 보관할 수 있었다.¹¹ 총독부박물관 문서는 문서과로 인계하지 않고 주무과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인데, 당시 박물관 및 문화재 조사와 관리 업무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총독부박물관에서 1910년대부터 상당량의 문서를 자체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문서과 인계의 원칙이 융통성 있게 적용되었던 것 같다. 공문서의 1년 단위 편철이나 2촌의 편철 두께 등이 철저히 준수되지 않은 점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총독부박물관에서는 평소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유물과 관련된 문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서과로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는 것이 용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총독부박물관이 국립박물관으로 넘어오면서 해당 문서도 일부 멸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총독부박물관 주임이었던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가 1946년 6월까지 억류되어 있으면서 총독부박물관 운영과 소장품의 인계를 마무리하였으며,¹² 당시 이 문서도 유물과 함께 국립박물관으로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언에 의하면, 총독부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어 보관되던 단일한 실체의 총독부박물관 문서는 1960~70년대의 어느 시점에 분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총독부박물관 문서는 당초 유물관리실(이후 유물관리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고고부에서 유적의 발굴 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문서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문서의 이관을 요청하였다. 이때 편철된 문서철이 통째로 이전된 경우도 있었고, 일부 문서철의 경우 파철된 후 일부분의 문서만 옮겨진 경우도 있었다. 유물관리부

10 『總務部文書課長委任規程』(朝鮮總督府內訓 第20號); 『朝鮮總督府處務規程』(朝鮮總督府內訓 第21號).

11 박성진·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서울: 역사비평사, 2007), pp.82–83.

12 有光教一, 『朝鮮考古學七十年』(京都: 昭和堂, 2007), pp.43–106.

와 고고부에서 각각 분리 보관되던 총독부박물관 문서는 양 부서에서 별도로 1996년과 1997년 정리 작업을 거쳐 목록집으로 각각 간행되었는데, 목록집 간행 당시 단일한 실체의 문서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무튼 두 목록집을 통해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전체 면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분리된 문서철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파철된 문서들은 원 기록철의 편철을 복원함으로써 문서의 원상을 복구하는 작업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상태로의 복구 작업을 거쳐 단일한 문서 상태를 복원한 후, 문서에 대한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분류 기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전산화 작업을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 개관을 맞이하며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3~2004년에 24만 면이 넘는 문서의 스캔 및 검색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전산 자료의 축적과 함께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였다. 2011년부터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온라인 공개 작업이 다시 추진되어,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누리집’을 구축했다. 이 누리집에서는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 보관하던 문서철 176권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연차적으로 공개하였다. 누리집에는 연도별, 지역별, 검색어별로 편리하게 문서를 찾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열람 검색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분류 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누리집의 바탕화면에 1차 분류기준으로 기부, 진열, 구입, 발견, 지정, 고적조사, 보존, 국유림 등 8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상기 항목들은 문서철(Series)–문건(File)–문서(Item)의 단계로 기록물 관리 ‘원질서의 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로 정렬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야별로 문서철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 이를 ‘관리 번호’로, 1996·1997 목록집의 연번은 ‘목록번호’로 표기하였다. 이와 달리 문서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고적(조사)’의 경우에는 하위 항목으로 고적조사위원회, 복명서, 조사보고, 고적·유물목록, 사진·도면 등 5개 항목이 다시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에 문서철–문건–문서 단계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장기간의 정리 사업을 거쳐 도출된 분류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분류 기준의 단계 설정에서 ‘고적(조사)’를 기부, 진열, 구입, 발견 등과 동일한 계층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하위 항목에서는 ‘조사보고’와 ‘고적·유물목록’, ‘사진·도면’ 등에 분류된 문서철이나 문건 중에서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많다. 아울러 ‘국유림’의 경우 총독부박물관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는 점에서 기준의 일관성이 지적될 수 있다.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원질서를 유지하면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분류 체계를 수립하는데, 기록물이 생산되거나 수집될 당시의 질서를 파악하여 분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기존의 분류 체계가 온전히 남아 있어 이를 검색에 활용하고 있다.¹³ 하지만 조선총독부 문서에 대한 분류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선총독부 문서의 관리 체계를 정해 놓은 처무규정에 ‘문서의 편찬유별 및 보존 종별은 따로 정하는

13 채미하, 『일본 근대 역사기록물의 분류와 기술』(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바에 의한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결된 공문서 분류에 유별편찬 규칙을 적용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¹⁴ 한편 총독부의 일부 문서철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분류표를 근거로 당시 분류 체계 복원을 시도한 연구도 있으나, 남아있는 목록의 양이 워낙 적어서 원질서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¹⁵

III. 문서 분류와 기능적 출처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는 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한 공문서가 다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문서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계기는 1909년 9월의 탁지부훈령인 「공문서기재에 관한 건」이며, 1895년 6월에 제정된 「公文類別及式樣」에서 공문류의 양식을 규정하였다. 그 후 조선총독부에서는 1912년 3월 조선총독부 훈령 제36호 「조선총독부공문서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총독부박물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규정에 의거하여 공문서를 생산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총독부박물관 기록물 내에는 행정용으로 작성 또는 시행한 문서와 아울러 고적조사와 박물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도면, 사진, 목록 등의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자료들도 공문서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현행 법령에서도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문서의 종류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중 ‘비치문서’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⁶ 따라서 문서뿐 아니라 도면, 사진, 목록 등 총독부박물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기록물들도 공문서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¹⁷

일반적으로 기록물은 도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다. 도서의 경우에는 주제에 따른 분류가 일반적이지만, 기록물은 해당 기록철의 주제나 내용보다는 기록물을 생산한 조직이나 그 조직의 기능에 크게 의존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집약한 것이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다. ‘출처주의’는 특정한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은 타 기관의 기록과 섞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기록물의 출처를 기준으로 동일 출처의 기록물이 다른 출처의 기록물과 구분되도록 정리 보존하는 것이다. 주제보다는 출처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 기록물을 정리하며, 같은 주제의 기록물이라도 출처가 다를 경우 서

14 이경용,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 1894~1969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2).

15 배성준,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 체계의 복원을 위한 시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워크숍 발표문』(2003).

16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56호, 2015.8.3. 일부개정) 제3조(정의)와 제4조(종류).

17 총독부박물관 기록물 중에는 이러한 ‘공문서’ 이외에도 조사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나 서신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로 구분한다.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기록물은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활동 과정에서 부여받은 순서와 지시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주의가 내적으로 전개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학 원칙을 통해 기록물을 생산 맥락에 조응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관리적 측면뿐 아니라 이용자가 기록물을 접근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¹⁸

기록물의 분류 방법은 조직의 구조 및 체계에 근거한 구조접근법, 기록물에 담긴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접근법, 기록물 생산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접근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구조접근법은 조직이 안정되고 기능적 행정적 업무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주제접근법은 기록을 활동이나 기능과 명확하게 연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된다.¹⁹

전통적인 기록물 분류의 원칙들의 의미를 새로운 환경에서 되살리기 위해서는 물리적 질서에 기반한 기록물 분류의 원칙을 논리적 질서에 기반한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론적·개념적인 구조로서의 출처 개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부합되는 것이 ‘기능적 출처’ 개념이다. ‘기능적 출처’ 개념은 기존의 조직 중심의 출처 원칙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출처를 ‘기록을 생산, 축적, 유지, 활용하는 개인이나 조직과 기록물 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출처를 새롭게 정의하면, 관계의 핵심은 기록을 생산,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기록을 생산하도록 만든 기능이나 활동에 있게 된다. 즉 기록물 분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록물을 산출한 업무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적 출처 개념은 급변하는 조직 문화와 정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있지만, 조직의 변천이 격심한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차례 이관된 기록물, 행정적 및 정치적 변화에서 생기는 복합 출처 기록물 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²⁰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경우에도, 총독부박물관은 조선총독부 내에서 여러 번 소속 과의 변천을 겪었으며, 세부 업무분장과 내용에서도 다수의 변동이 확인된다. 따라서 ‘기능적 출처’ 개념에 기반하여 총독부박물관 문서에 적합한 기능 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능 분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구 변천, 사무 분장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계층별로 단위 기능을 도출해야 한다. 물론 각 단위 기능은 정해진 범위를 가지며, 같은 계층에 속한 단위 기능들 간에는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없어야 한다.²¹

총독부박물관은 조선총독부의 소속부서 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박물관의 문서 분류 체계도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선

18 김상호, 『기록보존론』(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p.15; 박성진·이승일, 앞의 책(2007), pp.117–118.

19 설문원,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위한 기능분류 체계」,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 방법론」(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6), p.46.

20 지수걸·김익한·설문원,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분석」,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 방법론」(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pp.17–18.

21 설문원, 앞의 논문(2004), p.53.

총독부의 조직과 업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단위 기능을 추출하여 공문서를 분류한 선행 연구를 적극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추출된 단위 기능은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세부 기능의 4단계로 계층화되는데, 대기능은 국 및 道 단위 기능, 중기능은 과 및 部 단위 기능, 소기능은 과의 업무 및 부의 업무, 세부 기능은 소기능의 하위 기능에 해당한다.²² 이를 총독부박물관에 적용시켜 보면 대기능은 학무국으로, 중기능은 학무국 산하의 과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시기에 따라 조직의 변천은 있었지만, 학무과, 편집과, 종교과, 사회교육과, 고적조사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²³ 2005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에서는, 대분류를 학무, 중분류를 학무, 편집, 종교 등으로 나눈 후 다음과 같이 소분류를 행하였다.²⁴

표 1. 조선총독부 학무국 문서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무	학무	학무일반
		교원
		학교
		기상
	편집	편집일반
		교과용도서
	종교	종교일반
		유교
		불교
		기독교
		기타 종교

그리고 학무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다룬 『조선총독부 공문서 다계층상세목록집-학무국 사회교육 문서군편』에 의하면, 예컨대 사회교육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계층 분류표를 제시하고 있다.²⁵

총독부박물관에는 고적조사과에서 수행하던 기능에 해당하는 공문서들이 총체적으로 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중기능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박물관’으로 설정할 것인지, ‘고적조사’로 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설립 당초부터 박물관과 고적조사 기능이 일원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설정하여도 무방할 수 있다. 고적조사과가 1921~1924년 사이에 존치

22 지수걸·김익한·설문원, 앞의 논문(2004), p.21.

23 이명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구성변천과 기능」, 『한국독립운동사연구』6(1992), pp.64~84.

24 한국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서울: 한율, 2005), p.12.

25 한국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공문서 다계층상세목록집-학무국 사회교육 문서군편』(서울: 한율, 2005), p.21.

표 2. 조선총독부 사회교육 문서 분류

A 종교 기록	A1 유교 기록	A1.1 경학원 기록	
		A1.2 향교 기록	
	A2 불교 기록	A2.1 조선불교 기록	A2.1.1 사찰인가 및 寺法기록
			A2.1.2 주지취직 기록
			A2.1.3 사유재산 기록
			A2.1.4 사유림 별채 기록
		A2.2 일본불교 기록	
	A3 기독교 기록		
	A4 기타 종교 기록		
B 사회사업 기록	B1 사회사업 일반 기록	B1.1 사회사업 일반 기록	
		B1.2 법인 및 학회 기록	
	B2 청년훈련소 기록		

된 적이 있으므로 고적조사로 설정할 여지가 있으나, 문서의 보관과 관리가 시종 박물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설정하는 것이 식민지 전 시기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관건은 세부 기능에 해당되는 박물관의 업무를 기능별로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달려 있다. 총독부박물관의 기능 분류에 따라 관련 문서의 분류 체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IV. 박물관의 조직 및 기능 분석

총독부박물관은 조선총독부 고시 제296호(1915.11.19.)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경성 구 경복궁내에 설치하고, 大正 4년 12월 1일부터 일반의 관람을 허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총독부박물관은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과 단위에 소속된 하부 기구였다. 총독부박물관의 관장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박물관 운영의 책임을 맡은 직위는 과장 아래에 위치한 주임급 정도였다.

개관 당시에는 총독부박물관은 총독관방 총무국 총무과 소속이었다. 이후 1919년 8월 20일 총독관방 서무부 문서과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다. 1921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53호(1921.10.1.)에 의거하여 학무국 산하에 고적조사과가 신설되면서 총독부박물관은 고적조사과의 소관이 되었다. 초대 과장은 편집과장장을 지내던 동경제대 사학과 출신의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맡았다. 고적조사과 시기는 총독부박물관의 업무가 단독 과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던 유일한 기간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총독부의 재정 축소에 따라 1924년 고적조사과가 폐지되었고, 관련 업무는 학무국 종교과로 이관되었다. 총독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1932년 2월 13일부터는 학무국 사회과, 1926년 10월 16일부터는 학무국 사회교육과, 그리고 1942년 11월 1일부터는 학무국 연성과, 1943년 12월 1일부터는 학무국 학무과, 그리고 1944년 11월 22일부터는 학무국 교무과에 소속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총독부박물관 소속 직제의 변천

조직	시기	업무	관련법령
관방 총무국 총무과	1915.12.1.~	1. 문서의 접수, 발송, 사열,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官印의 管守에 관한 사항 3. 관보 및 인쇄물에 관한 사항 4. 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도서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에 관한 사항 7. 다른 部局課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조선총독부 훈령 제26호 (1915.5.1.)
관방 서무부 문서과	1919.8.20.~	1. 문서의 접수, 발송, 사열,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官印의 管守에 관한 사항 3. 관보 및 인쇄물에 관한 사항 4. 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도서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에 관한 사항 7. 다른 部局課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조선총독부 훈령 제30호 (1919.8.20.)
학무국 고적조사과	1921.10.1.~	1. 고적, 古社寺, 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에 관한 사항	조선총독부 훈령 제53호 (1921.10.1.)
학무국 종교과	1924.12.24.~	1. 신사 및 사원에 관한 사항 2. 종교 및 享祀에 관한 사항 3. 고적, 古社寺,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에 관한 사항	조선총독부 훈령 제34호 (1924.12.25.)
학무국 사회과	1932.2.13.~	1.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2. 제생원 및 감화원에 관한 사항 3.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 및 청년훈련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한 사항 6. 경학원 및 명륜학원에 관한 사항 7. 향교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종교 및 享祀에 관한 사항 9. 사원에 관한 사항 10.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조선총독부 훈령 제13호 (1932.2.13.)

학무국 사회교육과	1936.10.16. ~	1. 사회교육 및 사회교화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단 및 청년훈련소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한 사항 4. 경학원 및 明倫學院에 관한 사항 5. 향교재산에 관한 사항 6. 종교 및 享祀에 관한 사항 7. 사원에 관한 사항 8.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조선총독부 훈령 제31호 (1936.10.16.)
학무국 연성과	1942.11.1. ~	1. 청소년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육군병지원자훈련에 관한 사항 3. 청년특별연성에 관한 사항 4.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 및 사회교화에 관한 사항 6.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經學에 관한 사항 8. 종교에 관한 사항	조선총독부 훈령 제54호 (1942.11.1.)
학무국 학무과	1943.12.1. ~	1.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2. 교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유치원에 관한 사항 4. 기상대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6.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局內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조선총독부 훈령 제88호 (1943.12.1.)
학무국 교무과	1944.11.22. ~ 1945.8.15.	1. 사회교화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2. 경학원 및 유림에 관한 사항 3. 종교에 관한 사항 4. 享祀에 관한 사항 5.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박물관, 기타 관람시설에 관한 사항	조선총독부 훈령 제96호 (1944.11.22.)

총독부박물관 직제에서 큰 변화는 1921년 10월 1일 학무국 내 고적조사과의 출범이다. 비로소 총독부박물관이 관방에서 학무국으로 이관되었는데, 1945년까지 여러 과들을 전전하지만 학무국 소속에는 변함이 없었다. 무단통치로 식민지 지배와 동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제는 3·1운동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의 제반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했음을 통감하였으며, 아울러 1921년 경주에서 금관총이 발견되어 유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환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학무국 산하에 고적조사과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²⁶ 1921년 10월 서무부 문서과에 속해 있던 박물관 및 고적조사 사업과

26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蹟の遍歴』(東京: 六興出版, 1986), pp.4–5.

종래 학무국 종교과 소관이었던 ‘古社寺及古建築 保存 補助’에 관한 업무를 고적조사과에서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박물관 업무와는 별개로 학무국 종교과에 있던 고적, 고사사, 명승 및 천연기념물 업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 아울러 고적조사위원회의 업무도 고적조사과로 넘어오게 되었다.

총독부의 직제 축소에 따라 관련 업무는 1924년 12월에는 종교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된다. 종교과 소관이었던 문화재와 박물관 업무가 모두 1932년 사회과로, 1936년 사회교육과로 이관되는데 박물관이 도서관과 함께 묶여서 ‘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 1942년에는 연성과로, 1943년에는 학무과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업무 규정은 별도로 없었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만 규정에 남게 된다. 그러다가 1944년 11월 22일 교무과에 소속되면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과 별도로 ‘6 도서관, 박물관, 기타 관람시설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전체 구도 속에서 총독부박물관을 학무로 분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총독부박물관의 세부 업무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915년 12월 1일 공식 설립과 함께, 박물관의 전시와 소장품 관리 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시 기존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던 조사 관련 업무들이 이관되었다. 내무부 지방국 제1과의 고적조사, 내무부 학무국 편집과의 有史前 유적조사(사료조사), 참사관 분실의 활자 보관 및 금석문과 고문서 조사 등이 넘어오게 되었다.

고적조사과가 설치된 1921년 10월부터 1924년 12월 시기는 고적조사과 단계는 박물관 업무와 고적 관련 업무가 전형적인 형식을 갖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 고적, 고사사, 명승천연기념물 등 주제별로 업무가 분장되었는데, 식민지 조선에서 박물관과 문화재 행정의 틀이 잡히는 시기였다.

고적조사과의 내부의 업무 분장이나 인원구성은 『朝鮮ニ於ケル博物館事業ト古蹟調査事業史』(조선총독부박물관, 1925)에서 비교적 상세히 전해 준다. 고적조사과에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서무계, 박물관계, 고적계, 고사사계, 명승천연기념물계 등 5개의 계로 구분되었으며, 1923년 기술계가 추가되어 모두 6개의 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사진계와 경주 분관이 부가되어 있었다. 직원 한 명이 하나의 계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계에 중복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1923년도의 행정정리에 따라 전임 속 1명과 촉탁 2명이 감원되었고, 1924년 12월 고적조사과가 폐지되어 과장, 감사관, 촉탁 4명이 감원되면서 과 단위 직제가 없어지고 종교과로 편입되었다. 1925년 4월 시점에 종교과 소속 조선총독부박물관, 이를 ‘종교과 경복궁분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²⁷

고적조사과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내부 인력구성이나 업무 분장을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1930년대 내부 사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일본 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자료(小川敬吉 資料)』 2006 책자11에 「학무국 사회과 내 조선총독부박물관 사무 분담표」(이하

27 『朝鮮ニ於ケル博物館事業ト古蹟調査事業史』(조선총독부박물관, 1925).

표 4. 고적조사과 업무 분장 및 직원[『朝鮮ニ於ケル博物館事業ト古跡調査事業史』(조선총독부박물관, 1925)]

구분	업무	직원
과장		사무관 小田省吾
박물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의 진열, 보관, 수리 - 진열품의 구입, 기증, 기탁, 교환 - 진열품의 평가, 해설, 안내 - 박물관 안내기, 도감, 그림엽서 등 출판 - 박물관 협의회에 관한 건 	감사관 藤田亮策(주임) 기수 小川敬吉 촉탁 藤田整助 촉탁 小泉顯夫 고원 神田惣藏
고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적의 조사, 발굴, 유물 수집, 실측, 묘사 등 - 고적의 보존, 수리, 올타리 설치 - 고적의 등록, 등록 사무 - 고적도보, 고적조사보고의 편찬, 간행 - 기타 고적 유물의 보존 사업 	감사관 藤田亮策(주임) 기수 田中十藏 기수 小川敬吉 촉탁 野守健 촉탁 藤田整助 촉탁 小泉顯夫 촉탁 林漢韶 촉탁 梁世煥 촉탁 梅原未治 촉탁 諸鹿央雄 촉탁 加藤灌覺
고사사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사사 및 특별 보호 건조의 조사 - 동 보존공사 	촉탁 渡邊彰(주임) 기수 小川敬吉
명승천연기념물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승의 조사 보존 - 천연기념물의 조사 및 보존 - 명승천연기념물의 안내기 편찬 	촉탁 森爲三
서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예산 경리 - 물품 회계 - 문서, 기록, 도서의 취급 - 비품, 소모품의 수불, 보관 - 기타 일반 서무 사항 	속 中島喜一郎(주임) 속 猪野善三郎 촉탁 山内廣衛 고원 神田猪造
기술계		촉탁 小場恒吉(주임) 기수 田中十藏 촉탁 野守健
사진계		촉탁 澤俊一 촉탁 田野七之助
경주분관		촉탁 朴光烈[경주군수] 촉탁 吉羽慶一郎[同 서무과장] 고원 渡理文哉

표 5. 총독부박물관 업무 분장 및 직원(『小川敬吉 資料』)

	업무	인원	겸임	무급
		주임 촉탁 藤田亮策	부주임 속(兼) 葛城末治 속(겸) 田中藤次郎	촉탁 六角注多良 촉탁 梅原末治 촉탁 小場恒吉 촉탁 大坂太郎 촉탁 加藤灌覺
서무계	인사, 회계, 문서기록, 물품회계, 서무일반, 지정사무, 보존령에 관한 사항, 매장물, 진열품구입	제주임 촉탁 佐瀬直衛 (박물관관계사무 일반, 서무) 속 崔華石 (보물고적전연기념물보본사무보존회) 고인 崔世賢 (보물고적전연기념물사무 물품보관) 고인 金文顯 (박물관사무문서수부발송)		
보물 고적계	보물고적조사, 지정 원안작성, 보고서작 성출판, 보물고적대 장, 카드정리, 사진촬 영 및 원판보존	제주임 촉탁 藤田亮策 속 葛城末治 촉탁 野守健 촉탁 澤俊一	기수 小川敬吉(보물, 고적, 特二 건축물) 촉탁 有光敎一(보물, 고적) 촉탁 樞本龜次郎(보물, 고적)	
기술계	보물고적보존수리공 사, 제도, 실측, 기타 기술 일반	제주임 기수 小川敬吉 촉탁 杉山信三 촉탁 米田美代治	촉탁 野守健	촉탁 渡邊彰(주임) 기수 小川敬吉
명승 천연 기념 물계		제주임 촉탁 森爲三(동물, 식물) 촉탁 植木秀幹(식물) 촉탁 立岩巖(광물) 촉탁 葛城末治(명승)		촉탁 森爲三
진열계	진열품 보관, 정리, 진열사무, 대장, 카드 정리	제주임 촉탁 有光敎一 촉탁 樞本龜次郎	기수 小川敬吉 (진열관건축, 진열장, 탐파, 정원) 촉탁 野守健(도자기) 촉탁 藤田亮策(석기, 와전) 속 葛城末治(금석, 서화, 문서)	촉탁 朴光烈 [경주군수] 촉탁 吉羽慶一郎 [同 서무과장] 고원 渡理文哉

‘총독부박물관 사무 분담표’라 칭함)이다.²⁸ 이 자료는 총독부박물관에서 1916년부터 1944년까지 근무했던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1882~1950)의 사후에 가족들이 교토대학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교수에게 전달한 자료 중 일부로 알려져 있다. 「총독부박물관 사무 분담표」의 작성 시기는 아

28 金攻淑,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的建造物の保存と修理工事に関する研究」, 早稻田大学大学院 建築学 博士學位論文 (2008), p.105.

리미쓰가 경성에서 촉탁으로 근무하던 1933년 3월에서 1936년 10월 사이로 좁혀진다.²⁹ 이에 의거하여 총독부박물관의 업무와 인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30년대 중후반 총독부박물관의 인력구성과 업무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업무는 고적조사과 이래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 박물관과 고적조사, 고사사, 명승천연기념물 업무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1933년 8월 9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의 반포에 이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136호, 1933.12.5.),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수속」(조선총독부령 제42호, 1933.12.5.),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사규칙」(조선총독부 훈령 제43호, 1933.12.5.)가 제정됨에 따라 종래 「고적급유물보존규칙」과 「고적위원회규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을 통한 보호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1941년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주임을 맡았던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는 총독부박물관의 업무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³⁰ 박물관의 경영, 조선 각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고적 및 고건축의 수리 보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한 지정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1930년대 중후반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194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6. 총독부박물관 업무 분장 및 직원(有光教一, 『朝鮮考古學七十年』, 京都: 昭和堂, 2007)

계	박물관 업무
1 박물관계	박물관의 경영
2 고적계	조선 각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3 고적계, 고사사계	고적 및 고건축의 수리 보존
4 명승천연기념물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한 지정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기능별 출처’ 개념에 입각하여 총독부박물관에서 문서를 산출한 업무 기능은 서무, 고사사, 명승천연기념물, 고적, 박물관으로 나누어지며, 이를 세부 기능 단위로 설정하여 문서를 분류할 수 있다.

29 사회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사회과에 속하던 시기인 1932년 2월 13일에서 1936년 10월 15일 까지로 좁혀진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가 촉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리미쓰는 조선고적연구회 경주연구소에 근무하다가 1933년 3월부터 경주를 떠나 경성에서 근무하며, 1937년 10월에는 기수가 된다.

30 有光教一, 앞의 책(2007), p.34.

V. 분류 체계와 분류 기호

1. 분류 체계

총독부박물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의거할 때, 서무계, 기술계(고사사계), 명승 천연기념물계, 고적계, 박물관계(진열계)로 1차 분류를 할 수 있다. 각 계별 문서는 다시 업무 내용에 따라 다시 2차 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무계

- A.지정
- B.매장물
- C.보존령
- D.기타

서무계는 인사, 예산, 회계, 물품관리 등 부서의 기본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1933~36년 업무 분장에서는 지정 사무, 보존령에 관한 사항, 매장물, 진열품 구입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인사, 회계 등 기본 행정 업무에 관한 문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유적 및 유물과 직접 관련된 지정 사무, 보존령에 관한 사항, 매장물, 진열품 구입에 관한 문서는 남아 있다. 진열품 구입 관련 업무는 1924년 업무 분장에서는 박물관계 담당이지만, 1933~36년 업무 분장에서는 서무계 소관으로 되어 있다. 기증 및 기탁과 함께 소장품의 취득과 관련된 유사한 성격의 업무라는 점에서, 진열품 구입은 박물관계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문서 중 「272 쇼와(昭和) 5년 구미 시찰 보고」와 「284 조선에서의 박물관 사업과 고적조사사업사」처럼 특정한 계에 속하기 어려운 문서는 서무계에 '기타' 분류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 기술계(고사사계)

- A.사찰
 - ①사찰고
 - ②재산대장
 - ③재산목록
- B.고건축 보존
 - ①고건축물 목록
 - ②고적보존비
 - ③고적보존공사
 - ④고건축 수리

C. 고적보존

① 고적보존(연도별)

② 고적보존회

③ 고적보존(기타)

D. 국유림

E. 지적도

F. 도면 및 탁본

1924년 업무분장에서는 古社寺계로, 1933~36년 업무분장에서는 기술계로 불렸다. 고사사나 건축물의 조사 및 보존공사를 맡았다.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1882~1950),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와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 1909?~1942) 등 고건축 기술자들이 인적 구성을 이루어 제도, 실측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크게 사찰, 고건축 보존, 고적 보존, 그 외 국유림, 지적도, 도면 및 탁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찰 관련 문서는 각도별 사찰고, 본말재산대장, 사찰령 개정에 따른 재산목록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고건축 수리 관련 문서는 각도별 고건축 목록, 연도별 고적 보존비, 연도별 고적보존공사, 고건축 수리 관련 문서로 분류된다. 고적 보존 관련 문서는 연도별 고적 보존, 전국 고적보존회, 그 외 기타 고적 보존 관련 문서로 나눌 수 있다.

○ 명승천연기념물계

A. 천연기념물

B. 명승

명승천연기념물계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조사와 보존을 맡았다. 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 관리 업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촉탁으로 위촉되었다. 고적조사과 단계에서는 경성고보 교유였다가 경성제대로 자리를 옮긴 모리 타메조(森爲三, 1884~1962)가 계속 맡았으며, 추가로 식물 분야의 수원농림전문학교 우에키 호미키(植木秀幹, 1882~1976), 광물 분야의 총독부 식산국 지질 조사소 다테이와 이와오(立岩巖, 1894~?) 등이 맡고, 명승의 지정에 관해서는 조선사편수회의 가쓰라기 스에지(葛城末治)가 담당하는 등 전문분야 별로 인력 보완이 이루어졌다.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세분 항목을 두었다.

○ 고적계

A. 고적조사위원회

B. 고적조사

① 복명서

② 조사서

- ③조사일지
 - ④보고서 편찬
 - ⑤수집품 인계목록
 - ⑥원고
- C. 등록
- ①고적 대장
 - ②등록 원고
- D. 유리원판사진
- E. 조선고적연구회
- F. 기타

기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편찬한 두 권의 목록집에서 제시된 분류 체계에서 혼선이 많은 부분이다. 고적계의 주요 업무가 고적 조사, 고적 등록, 보고서 편찬임을 고려하여 우선 1차 분류로 고적조사위원회, 고적조사, 등록으로 설정하였다. 고적조사의 하위 항목으로 고적조사과정에서 산출된 문서와 부산물인 복명서, 조사서, 조사 일지, 수집품 인계목록을 설정하였고, 보고서 편찬과 원고를 아울러 넣었다. 당시 유리원판으로 사진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과 보존이 요구되었다. 총독부박물관에서는 사와 쿤이치(澤俊一)가 전담하였는데, 고등소학교를 졸업한 후 사진관에서 일을 하다가 1908년 경성에서 개업한 무라카미(村上) 사진관으로 건너왔다. 1912년부터 1913년에는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제2차 사료조사에 화가 사토 준키치(佐藤醇吉, 1876~1958)와 함께 참여하였으며, 1916년부터 해방까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근무하였다.³¹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38,000여 매의 유리건판사진 중 다수가 사와에 의해 촬영된 것이다. 아울러 1931년 설립된 조선고적연구회와 관련된 일련의 문서첩이 있는데, 업무분장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선고적연구회가 총독부를 대신하여 고적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에 참여한 인적 구성원들도 대부분 총독부박물관에서 고적조사를 담당했던 고적계 직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고적계의 세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³²

○ 박물관계

- A.구입
- B.기증·기탁
- C.진열

31 吉井秀夫, 「澤俊一とその業績について」, 『高麗美術館紀要』6(2008).

32 오영찬,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1931~1932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55(2011).

1924년 업무 분장에서는 진열품의 구입, 기증, 기탁 등 소장품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33~36년 업무분장에서는 진열품 보관, 정리, 진열사무, 대장, 카드 정리 등 소장품의 취득 부분은 사라지고, 전시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되고 있다. 박물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장품 취득과 관련된 구입, 기증 및 기탁을 세부 항목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진열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총독부박물관 문서 분류 체계(안)

○ 서무계	○ 명승천연기념물계
A.지정	A.천연기념물
B.매장물	B.명승
C.보존령	○ 고적계
D.기타	A.고적조사위원회
○ 기술계(고사사계)	B.고적조사
A.사찰	①복명서
①사찰고	②조사서
②재산대장	③조사일지
③재산목록	④보고서 편찬
B.고건축보존	⑤수집품 인계목록
①고건축물 목록	⑥원고
②고적보존비	C.등록
③고적보존공사	①고적 대장
④고건축 수리	②등록 원고
C.고적보존	D.유리원판사진
①고적보존(연도별)	E.조선고적연구회
②고적보존회	F.기타
③고적보존(기타)	○ 박물관계
D.국유림	A.구입
E.지적도	B.기증 및 기탁
F.도면 및 탁본	C.진열

2. 분류 기호

분류 기호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고유성, 간결성, 표현성이다.³³ 앞서 언급한 대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세부기능의 순으로 분류 기호를 설정할 수 있다. 총독부박물관의 문서 분류 기호는 조선총독부 문서의 분류 체계를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33 김태수,『분류의 이해』(서울: 문현처리정보연구회, 2000), p.141.

먼저 대기능은 중앙관서, 지방관서, 소속 관서로 범주화되는데, 이는 기존 연구의 분류를 따른다.³⁴ 총독부박물관 문서는 ‘A 학무’에 해당된다.

표 8. 조선총독부 공문서 대분류 분류 기호

구분	조직	기호
A	총독관방	관방
	내무국	내무
	재무국	재무
	식산국	식산
	법무국	법무
	학무국	학무
	경무국	경무
B	증추원	증추
	체신국	체신
	철도국	철도
	전매국	전매
	세무감독소	세무
	세관	세관
	재판소	재판
C	형무소	형무
	기타	기타
	경기도	경기
	강원도	강원
	충청북도	충북
	충청남도	청남
	경상북도	경북
	경상남도	경남
	전라북도	전북
	전라남도	전남
	합경북도	합북
	합경남도	합남
	평안북도	평북
	평안남도	평남
	황해도	황해

34 설문원, 앞의 논문(2004), p.61.

중기능 분류 기호는 2자리 숫자를 활용한다. 학무국 산하 과 단위 기능을 중심으로 중기능을 추출하여 두 자리 숫자의 번호를 부여한다. 학무국의 중기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중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학무국 내 과별 조직의 변천과 기능을 고려하면,³⁵ 학무(01), 편찬(02), 종교(03), 사회교육(04), 박물관(05), 기타(06) 등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소기능은 총독부박물관의 기능을 분석하여 추출하였으며, 역시 2자리 숫자를 부여하였다. 앞서 기능분류에 따라 서무(01), 고사사(02), 명승천연기념물(03), 고적(04), 박물관(05)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계별 업무에 해당된다. 세부 기능과 세부 하위 기능은 계 내에서의 업무 분장과 연결시켜 문서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되는데, 이는 앞 절에서 분석한 계별 업무 분장에 해당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총독부박물관 문서 분류 기호(안)

소기능	세부 기능	세부 하위 기능
서무(01)	지정(a)	
	매장물(b)	
	보존령(c)	
	기타 서무(d)	
고사사(02)	사찰(a)	사찰고(01)
		재산대장(02)
		재산목록(03)
	고건축보존(b)	고건축물 목록(01)
		고적보존비(02)
		고적보존공사(03)
		고건축수리(04)
	고적보존(c)	고적보존(연도별)(01)
		고적보존회(02)
		고적보존(기타)(03)
	국유림(d)	
	지적도(e)	
	도면 및 탁본(f)	
명승천연기념물(03)	명승(a)	
	천연기념물(b)	

35 이명화, 앞의 논문(1992), pp.64-84.

	고적조사위원회(a)	
		복명서(01)
		조사서(02)
		조사일지(03)
		보고서 편찬(04)
		수집품 인계목록(05)
		원고(06)
고적(04)	고적조사(b)	고적대장(07)
		등록(c)
		등록원고(08)
	유리원판사진(d)	
	조선고적연구회(e)	
	기타(f)	
박물관(05)	구입(a)	
	기증 · 기탁(b)	
	진열(c)	

이상에서의 논의를 통해 조성된 기호를 조합하여, 일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학무 01-04 b 01-01

A : 대기능군(중앙관서기능)

학무 : 대기능(학무)

01 : 중기능(박물관)

| : 구분기호

04 : 소기능(고적)

b : 세부기능(고적조사)

01 : 세부하위기능(복명서)

| : 구분기호

01~ : 해당 주제문서의 일련별 번호

이럴 경우 총독부박물관 문서번호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다는 난점이 있을 수 있다. 통상 문서를 표시할 때 앞 부분에 ‘총독부박물관 문서’라는 것이 표기되면 굳이 대기능과 중기능을 표시할 필요는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04 b 01-01’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문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소기능의 경우 숫자 약호를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고적 b 01-01’로 표기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가독성을 고려하여 숫자 약호와 알파벳 약호를 사용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VI. 맷음말

이상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 대해 ‘기능적 출처’의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분류 체계와 분류 기호를 제시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맷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90년대 이후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목록화와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이한 분류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분류 기준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조선총독부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조선총독부 공문서 체계에 부합되고 편입이 가능하도록 문서 분류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 기능적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총독부박물관의 조직과 기능에 부합하는 분류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 그러한 분류 체계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간명한 분류 기호가 부여됨으로써 문서의 검색과 활용에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 체계에 맞춰 총독부박물관의 대기능은 학무국으로, 중기능은 학무국 산하의 과 단위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기능별 출처’ 개념에 입각하여 총독부박물관의 업무 기능은 서무, 고사사, 명승천연기념물, 고적, 박물관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계별 문서는 업무 내용에 따라 다시 2차 분류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세부기능의 순으로 분류 기호를 설정하였다. 총독부박물관 문서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 체계에서 ‘A 학무’에 해당된다. 중기능 분류 기호는 학무국 내 과별 조직의 변천과 기능을 고려하여 학무(01), 편찬(02), 종교(03), 사회교육(04), 박물관(05), 기타(06) 등으로 설정하였다. 소기능은 총독부박물관의 기능을 분석하여 추출하였으며, 2자리 숫자를 부여하였다. 서무(01), 고사사(02), 명승천연기념물(03), 고적(04), 박물관(05)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계별 업무에 해당된다. 세부 기능과 그 아래 하위 기능은 계 내에서 업무 분장과 연결하여 다시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상으로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새로운 분류 체계와 분류 기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시론적 제안이며, 고정적이거나 불변의 鐵案은 아니다. 앞으로 자료의 세부 발굴이나 재검토에 의해 분류 체계와 분류 기호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산 검색을 위한 개별 낱장이나 하부의 건별 또는 장별 문서의 분류와 검색을 위해서는 보다 하위 단계의 분류 체계와 기호가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총독부박물관 문서의 학술적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간 문서의 정리와 목록화, 전산화

에 이십년 넘게 공력을 들여온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보다 효율적인 분류와 체계화를 통해 자료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본고가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맺는다.

■ 투고일 2019. 9. 20. | 심사개시일 2019. 10. 25. | 개재 확정일 2019. 11. 22. ■

참고문헌

【보고서·단행본】

-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목록』,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6.
- _____,『광복 이전 박물관 자료목록집』,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7.
- 김상호,『기록보존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 김태수,『분류의 이해』, 서울: 문현처리정보연구회, 2000.
- 박성진·이승일,『조선총독부 공문서』, 서울: 역사비평사, 2007.
- 이순자,『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9.
- 지수걸 외,『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방법론』,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 채미하,『일본 근대 역사기록물의 분류와 기술』,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 한국국가기록원,『조선총독부 공문서 다계층상세목록집-학무국 사회교육 문서군편』, 서울: 한울, 2005.
- _____,『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 서울: 한울, 2005.
- 황수영 편,『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고고미술자료 제22집』, 서울: 고고미술동인회, 1973.
- 황수영 편, 이양수·이소령 중보, 강희정·이기성 해제,『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 서울: 국외 소재문화재재단, 2014.

【논문】

- 김도형,『일제하 총독부박물관 문서와 관리 체계』,『기록학연구』3, 2001.
- 배성준,『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 체계의 복원을 위한 시론』,『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2003.
- 서동천,『일제강점기 초기 역사적 건조물 보존수리의 특징에 관한 연구: 고적보존회 활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34-1, 2018.
- 서효원,『화엄사 각황전 수리공사를 통해 본 '보존령' 제정 이후 일제강점기 보물 건조물 수리공사의 현장운영과 수리방침』,『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34-1, 2018.
- 서효원·전봉희,『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개심사 대웅전 수리공사의 체계와 경과』,『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33-7, 2017.
- 설문원,『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위한 기능분류 체계』,『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 방법론』,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6.
- 심재연,『조선총독부 문서에서 보이는 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발굴 조사와 문서행정』,『인문과학연구』45, 2015.
- 오영찬,『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1931~1932년을 중심으로』,『한국문화』55, 2011.
- 이경용,『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 1894~1969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이명화,『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구성변천과 기능』,『한국독립운동사연구』6, 1992.
- 이현일·이명희,『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과 지정』,『미술자료』85, 2014.
- 조은정,『일제강점기 요지조사와 고려청자 연구의 의미』,『미술사학』33, 2017.
- 지수걸·김익한·설문원,『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분석』,『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 방법론』,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일본어】

- 吉井秀夫,『澤俊一とその業績について』,『高麗美術館紀要』6, 2008.
- 小泉顯夫,『朝鮮古代遺蹟の遍歴』, 東京: 六興出版, 1986.
- 有光教一,『朝鮮考古學七十年』, 京都: 昭和堂, 2007.
- 金玟淑,『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的建造物の保存と修理工事に関する研究』, 東京: 早稲田大学大学院建築学 博士學位論文, 2008.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its Code on Archives of the Government-general Museum of Joseon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Youngchan Oh^{*}

This paper presents a new classification and code system on the Archives of the Government-general Museum of Joseon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ree points were noted that since the Museum belonged to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to comply with the Archives system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based on the concept of the functional provena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assific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the Government-general Museum of Joseon; a systematic and simple classification codes should be given based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searching and using the official document.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its code are proposed in the order of major function, medium function, small function, and detailed function. The major function of the Archives is ‘A-Educational affairs’, medium function ‘Museum.’ The small function may be divided into General affairs (01), Temple (02), Scenic Spot and Natural Monument (03), Historical Site (04), and Museum (05). The detailed function and detailed sub-functions are categorized by the various work assignments in each work units. I hope that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will make a contribution to organizing and utilizing the Archives of the Government-general Museum of Joseon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Keywords: Government-general Museum of Joseon, Archives, National Museum of Korea,
Functional Provenance, Classification System

*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